



협회 일보



제839호

2024.9.3.(화)

환경부,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방안 마련

- ◇ 불소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- ◇ 개정안 공포 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사용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

최근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불소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을 입법예고('24.8.30~10.14) 하였습니다.

이번 개정(안)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*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불소기준에 대하여 1지역은 800mg/kg, 2지역은 1,300mg/kg, 3지역은 2,000mg/kg으로 현행 기준대비 2배 이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* 국내 지반 대부분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토양 내 불소 우려 기준을 설정한 국가(미국, 캐나다, 일본 등) 대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환경부에 권고

동 개정(안)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재활용 기준**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를 위한 중간처리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, 불소 오염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1지역 및 2지역***의 공사현장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,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. (「건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2)

*** (1지역) 주거지, 농지 등, (2지역) 임야 등

이번 개정(안)은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